

#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4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0.03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농지법이 개정(2009.11.28)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농지법 제44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
  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  - 다. 합의 : 해당없음
  - 라. 기타
- 입법예고(2010.02.05 ~ 2010.02.25)결과 : 의견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## **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**

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농지법(개정)

[시행 2009.11.28] [법률 제9721호, 2009. 5.27, 일부개정]  
농림수산식품부 (농업정책국 농지과) 02-500-1719~1720

제3절 농지원부 <개정 2009.5.27>

제44조 삭제 <2009.5.27>

제45조 삭제 <2009.5.27>

제46조 삭제 <2009.5.27>

제47조 삭제 <2009.5.27>

부칙 <제9721호, 2009. 5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
최초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독촉장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 
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.

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50조를 삭제한다.

## 농지법(종전)

[시행 2009.10. 2] [법률 제9620호, 2009. 4. 1, 타법개정]  
농림수산식품부 (농업정책국 농지과) 02-500-1719~1720

###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

- 제44조 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** ①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(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,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· 구(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.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.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 · 구 · 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② 시 · 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 · 구 · 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 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.

- 제45조 (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)** ①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개정 2008.2.29, 2008.12.29>

1.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
2. 관할 시장(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)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 · 구 · 읍 · 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
3.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 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
- ③ 위원장은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- ⑤ 위원의 임기 · 선임 · 해임,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 · 회의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6조 (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)**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掌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
2.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3.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
4.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제47조 (경비 보조)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.

##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하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·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
2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3. 어업허가 정수 조정
4. 「수산업법」 제87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내수면어업인 대표
3.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